서울특별시교육청

우리 아이들을 위한 작은 관심, 소중한 실천

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

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요령

학생 보호자용

아동학대!
우리 사회를 병들게
하는 범죄입니다.

소중한
우리 아이들의
행복한 미래를
지켜주세요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어느 쪽이 아동학대일까요?

내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옷걸이로 머리와 엉덩이를 **다섯 번이나 때렸어요 ㅠㅠ**

VS

아빠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신경 안 써서 지난 일주일 동안 **학교에 안 갔어요.**

어느 쪽이 아동학대?

둘 다 아동학대 입니다.

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
모든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.

떠밀기

때리기

방치

유기

"어휴 넌 그것도 못하니?"

가족 내 왕따

꼬집기

조르기

음란물 노출

성적 추행

"잠자지 말고 공부해!"

"나가"

아동학대 란?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**18세 미만인 아동**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,
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**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**을 저지르거나,
유기, 방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.

신체학대

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,
도구를 사용하여 **신체를 가하는 행위,**
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

정서학대

원망적/거부적/적대적, 경멸적인 **언어폭력,**
잠을 재우지 않는 것, 벌거벗겨 내쫓거나
집을 싸서 **쫓아내는 행위**, 아동이
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

성학대

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
아동에게 행하는 **모든 성적**
행위, 아동에게 **성적 노출**을
하거나 아동을 성적으로
추행하는 행위, **성매매**를
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등

유기

보호자가 아동을
보호하지 않고
버리는 행위 등

방임

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**불결한**
환경, 위험한 상태에 **방치**하거나
이유 없이 **학교에 보내지 않고,**
아동에게 필요한 **의료적 처치**를
하지 않는 행위 등

아동학대 용서되지 않습니다!

#사랑의 매, 훈육을 위해 그랬어요 (아이를 위해 그런 건데…)

사례 1	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려 ..
사례 2	자녀가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려 ..

훈육의 목적이었더라도 **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**될 경우,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#난 잘못 없어요, 아이가 원해서 그랬어요 (이 정도가 무슨 아동학대라고…)

사례 1	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아 ..
사례 2	자녀가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수일간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..

아동의 교육과 **의식주의 보장**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. 정도가 약해 보이더라도 **아동학대의 피해 경험은 아동 자신은 물론, 가족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**을 끼칩니다.

아동학대 처벌 기준

(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)

※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인 경우 "아동복지법"과 "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"이 함께 적용

	금지행위	처벌
01	아동을 **매매**하는 행위	10년 이하의 징역
02	아동에게 **음란한 행위**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**성적 수치심**을 주는 **성희롱** 등의 성적 학대 행위	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03	아동의 **신체에 손상**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04	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**정서적 학대** 행위	
05	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·양육·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**방임 행위**	
06	**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**시키는 행위	
07	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**구걸하는 행위**	
08	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**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**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09	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**양육을 알선**하고 **금품을 취득**하거나 **금품을 요구** 또는 약속하는 행위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10	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**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**하는 행위	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아동학대 발견 시 버려야 할 편견

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?

아동학대 자는 통계상 부모(75.6% 그중 친부모 72.3%), 대리양육자(16.7%), 친인척(4.4%) 등으로 대부분 **부모의 학대**로 나타납니다.

있을 수도 있는 일?

아동학대는 가정사라는 관점 대신에 **아동 인권 중심의 인식이 건강한 사회**, 사회 범죄 예방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.

맞으면서 크는 거지, 사랑의 매 몰라?

아동의 행동은 매로는 고칠 수 없으며, 어떤 이유로도 **아동 대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**

이 정도가 아동학대?

아동학대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도 **아동학대 피해 경험은 성장 과정의 아동, 가족,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**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?

아동은 학대가 만성화되면, 무력감과 좌절감을 겪으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. **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이 가족에 의한 피해 사실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**

내가 꼭 신고해야 해?

아동학대는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**인지한 사람의 신고가 가장 효과적**입니다. 아동학대로 의심되면 이를 발견한 사람은 **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**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아동학대 신고방법 112

언제?

-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
- 아동의 울음소리, 비명,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
-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
-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

무엇을?

-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
- 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-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-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경우

※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,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.

신고방법

신고처 : 국번 없이 112(전화, 문자), 아이지킴콜앱

아이지킴콜 앱
- 전화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**앱으로 신고 가능**
- 점검/신고 탭에 있는 **아동학대 체크리스트**를 통해 의심스러운 **아동학대 상황을 직접 점검 후 신고 가능**

아이지킴콜 앱 다운로드방법
'앱스토어(IOS)' 및 PLAY 스토어(안드로이드)'에서 '아동학대' 또는 '아이지킴콜' 직접 검색 후 다운로드 또는 우측의 '아이지킴콜 앱' QR코드를 통한 다운로드

아이지킴콜 앱 QR코드

IOS용 | 안드로이드용

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지금 이 순간
당신의 관심과 용기를
기다리는 아이들이
있습니다.

아동학대 관련 신고

· 국번 없이 112 ·

· 아이지킴콜 앱 ·